

인터넷 외환거래 예약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인터넷 외환거래 예약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종류)

1. 해외송금 예약 서비스

- 가. 해외송금 예약 서비스 : 고객이 송금할 날을 지정하여 해외송금을 신청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날에 은행이 자동으로 해외송금 신청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나. 자동 해외송금 서비스 : 고객이 송금 주기와 신청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해외송금을 신청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신청 유효기간 내에서 지정된 송금 주기에 따라 은행이 자동으로 고객의 해외 송금 신청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다. 환율지정 해외송금 예약 서비스 : 고객이 송금환율과 신청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해외송금을 신청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신청 유효기간 내에서 은행이 고시한 송금 보내실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송금환율과 일치하는 때에 은행이 자동으로 고객의 해외송금 신청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 외환매매 예약 서비스

- 가. 환율지정 외환매입 예약 서비스 : 고객이 환율과 신청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외환매입을 신청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신청 유효기간 내에서 은행이 고시한 송금 보내실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과 일치하는 때에 은행이 자동으로 고객의 외환매입 신청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나. 환율지정 외환매도 예약 서비스 : 고객이 환율과 신청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외환매도를 신청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신청 유효기간 내에서 은행이 고시한 송금 받으실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과 일치하는 때에 은행이 자동으로 고객의 외환매도 신청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제3조 (이용대상자)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고 승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전자금융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외환매매 예약서비스의 경우에는 전자금융 이용자중 국민인 거주자에 한합니다.

제4조 (서비스 신청)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전자금융 ID와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OTP카드 또는 보안카드)의 난수, 은행이 정한 인증서 등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 본인의 신청으로 간주하고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거래 가능금액)

최소 미화 100불 상당액 이상 최대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로 합니다.

제6조 (해외송금 예약 서비스의 처리)

1. 은행이 해외 송금하여야 할 때에 통장, 수표, 지급 청구서 없이 은행이 고객의 출금계좌에서 송금금액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송금수수료, 전신료 및 해외은행 수수료를 포함)를 인출합니다.
2. 출금계좌가 원화계좌인 경우 송금금액과 해외은행 수수료는 은행이 해외 송금하는 때의 은행이 고시한 송금 보내실 때 환율을 적용하고, 출금계좌가 외화계좌인 경우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외화로 납부하는 경우는 은행이 해외 송금하는 때의 은행이 고시한 송금 받으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3. 은행이 해외 송금하여야 할 서비스 신청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은행이 고시한 '송금 보내실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보다 작거나 같으면, 고객이 지정한 환율과 고시환율이 일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송금 거래를 처리합니다.
5. 해외송금 예약신청건의 송금 거래 처리는 은행의 영업일 영업시간 내(09시-16시)에만 가능합니다.

제7조 (외환매매 예약 서비스의 처리)

1. 은행이 외환을 매매하여야 할 때에 통장, 수표, 지급 청구서 없이 은행이 고객의 출금계좌에서 매매주문금액을 인출하여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2. 고객이 외환 매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은행이 외환 매매하여야 할 때의 은행이 고시한 송금 보내실 때 환율 또는 고객이 외환 매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은행이 외환 매매하여야 할 때의 은행이 고시한 송금 받으실 때 환율을 적용합니다.
3. 은행이 외환 매매하여야 할 서비스 신청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외환매입 거래는 은행이 고시한 '송금 보내실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보다 작거나 같을때, 외환매도 거래는 은행이 고시한 '송금 받으실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 보다 크거나 같을 때 고시환율과 고객이 지정한 환율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외환 매매거래를 처리합니다.
5. 외환매매 예약 신청건의 매매거래 처리는 은행의 영업일 영업시간 내(09-16시)에만 가능합니다.

제8조 (신청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

은행이 고객의 서비스 신청 내용에 따라 해외 송금 또는 외환 매매 처리한 후에는 서비스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서비스 제한)

은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고객의 서비스 신청을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1. 은행이 해외 송금하여야 할 때에 출금계좌의 현금화된 예금잔액이 송금금액과 수수료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또는 은행이 외환 매매하여야 할 때에 출금계좌의 현금화된 예금잔액이 외환매매 거래금액보다 작은 경우
2. 출금계좌에서 송금금액과 수수료 또는 외환매매 거래금액을 인출할 때 현찰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3. 출금계좌의 해지, 거래중지계좌 편입, 기타 법적인 지급 제한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서비스가 부적당하다고 은행이 인정한 경우
4.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이 은행이 송금하여야 할 또는 외환 매매하여야 할 당일인 경우

5.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국환 거래법령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신이고 (수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 또는 신이고(수리) 금액의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 (면책)

다음 각호의 손실에 해당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및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은행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1. 해외 은행명, 은행주소, 입금계좌번호 및 예금주 명 상이 등으로 해외 송금한 대금이 해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법령, 규칙, 제한 등의 규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
3. 해외은행의 착오, 부주의, 지급거절, 지급지연, 지급불능, 기타 은행이 지시한 내용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 '약관의 변경'을 준용합니다.

제12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외환거래 기본약관' 및 기타 은행의 예금 및 신탁 관련 제 약관 및 외국환거래관련 제 법규를 준용합니다.